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처분

나. 대상 국유특허

구분	발명기관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1	국립문화재연구소	10-1990849	기와 고정 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기와지붕

다.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계약기간 만료 후 1회에 한하여 수의재계약 가능)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 가능함

※ 수의재계약 여부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실시계약의 성실 이행과 계속 실시할 필요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함

라. 입찰금액 : 비공개로 하며, 전용실시의 성격을 반영하여 3백만 원부터 응찰 가능

※ 해당 입찰금액은 최소실시료로 간주되며, 낙찰 시 입찰비용을 선납하여야 함(입찰보증금과 다름)

2. 입찰개요

가.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전자입찰 (<http://www.onbid.co.kr>)

※ 우편입찰 및 현장입찰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기간 : 2020. 10. 19.(월) 09:00 ~ 2020. 10. 29.(목) 18:00 [11일간]

나. 개찰일시 : 2020. 10. 30.(금) 10:00

다. 개찰장소 : 한국발명진흥회 국유특허 전용실시권 담당자 PC

3. 응찰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전자 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응찰 희망자는 입찰기간 마감 전까지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업계획서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후 “온비드”를 통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비드”에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입찰 마감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응찰은 무효로 간주합니다.**

다.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업계획서 제출

- 1) 제출기한 : 2020. 10. 29.(목) 18:00 (제출기한 엄수, 기한 이후 도착분은 인정하지 않음)
- 2) 제출방법 : E-메일 또는 우편 발송 (입찰마감 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현장제출 불가)
(E-mail)dowon@kipa.org / (주소)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한국발명진흥회 18층 지식재산거래소
- 3) 작성방법 : [첨부1] 양식 참고

4. 입찰참가 자격

가. “온비드” 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라. 입찰당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자(체납한 자의 입찰은 무효 처리됨)

마.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자(2인 이상 공동입찰 금지)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시작시간, 입찰마감시간 등 입찰 관련 시간은 온비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5/100이상, 현금 또는 보증서)을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급은행의 장애 등으로 입찰서 제출 시 발급받은 납부계좌로 입찰보증금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를 추가 발급받아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자를 제외한 다른 응찰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을 응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반환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의 결정방법

가. 유효 응찰자 중 응찰액 기준 상위 2인에 대하여, 응찰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특허의 특성, 응찰자의 사업화역량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결정위원회에서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 단, 동일 금액의 응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 금액 응찰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유효 응찰자가 1인 뿐인 경우, 그 1인에 대하여 사업자 결정위원회에서 낙찰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위원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낙찰자 없음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의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공통) 국유특허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대리인이 개인을 대리할 경우) 위임장,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4) (대리인이 법인을 대리할 경우)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각 1부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합니다.

나. 최소입찰금액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미만으로 응찰한 경우,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입찰기간 내 사업계획서 미제출 시, 전자입찰에 응찰한 경우에도 그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 게재에 의합니다.

11.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현장설명을 생략하였으므로, 응찰자는 특허청에서 정한 전용실시계약의 조건, 「국유재산법 및 동법 시행령」·「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관련규정 숙지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의 개찰결과 유효한 응찰자가 없거나 또는 사업자 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낙찰자 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12. 실시계약 체결 및 주요 계약사항

-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나.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찰금액을 특허청이 지정한 전용계좌로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 낙찰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해당 국유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계약기간 전체를 포괄하여 **반기 또는 분기별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는 **사업 계획서에 대한 보완 조치를 계약체결의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라. 계약 체결 후 실시권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전용실시권을 등록하여야 하며, 특허청은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합니다.
- 마. 국유특허권 실시행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제반 인가, 허가, 등록 또는 승인의 취득은 전용 실시권자의 단독 책임으로 합니다.
- 바. 실시권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사업진행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추진현황, 목표달성정도, 향후 사업계획(사업계획서와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 및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조치사항 포함)**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 단 전년도 기준 계약 체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이 10월 1일 이후인 경우), 사업진행 현황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사업화 현황 점검을 목적으로 개발자 또는 전문가의 현장방문 예정**
- 사. 실시권자가 전용실시 이후 제품화한 시점부터 동 국유특허가 적용된 제품의 매출금액에 계약서에 기입된 점유율 및 기본율(단, (점유율)×(기본율)은 최소 3%이상이어야 함)을 적용하여 최소실시료를 공제한 경상실시료를 부과합니다.
- 아. 실시권자는 계약체결 후 특허청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건 실시권을 이전하거나 재실시 및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자.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동안 동 국유특허를 바탕으로 기술을 개량하는 경우 **개량된 기술의** 소유권 귀속, 실시료 등 기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 차. 특허청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실시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3. 실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가. 실시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시권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계약의 각 조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2) 동 국유특허권의 실시에 대하여 허위보고 기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 3) 본 계약의 체결이 허위표시, 기타 사실과 다른 내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드러나는 경우
 - 4) 기타 동 국유특허 실시와 관련하여 공공복리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특허청은 매년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연간 사업진행현황을 평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계약에서 정한 특허가 실시될 가능성이 명백하게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게을리 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본 계약에서 정한 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실시권자의 사업진행현황이 사업계획서와 상당부분 불일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사업진행현황 평가 후 보완 또는 시정 요구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 ※ 실시권자는 상기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에 특허청은 30일 이내에 사업진행현황에 대하여 재평가를 합니다.

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미 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실시행위에 의한 산출물을 실시권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 실시계약이 해지된 이후라도 실시권자는 그 산출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실시권의 소멸 사유

가. 실시권자가 본 계약 관련 사업을 하지 않거나 해산·청산·파산·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본 계약에 의한 실시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실시권이 소멸된 경우 이미 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실시행위에 의한 산출물을 실시권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경우 실시권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실시권자는 그 산출물에 대응하는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문의사항

가. 계약 및 전용실시 관련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 김영준 주무관(☎) 042-481-5172

한국발명진흥회 이도원 주임 (☎) 02-3459-2766

김진한 주임 (☎) 02-3459-2809

나. 전용실시 기술 관련 문의 :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소진 연구사 (☎) 042-860-9134

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 이용안내(☎1588-5321)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붙임】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업계획서 양식

2020년 9월 29일

한 국 발 명 진 흥 회 장

[붙임] 국유특허 전용실시 사업계획서 양식

사 업 계 획 서

* 아래는 사업계획서 샘플이며, 자체 양식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1. 회사현황

회 사 명	(대표 : 〇〇〇)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설립일자	0000.00.00.
담 당 자	성 명	〇 〇 〇	연락처	010-0000-0000
			e-mail	abc@abcd.com
소 재 지	본 사	(우편번호) 소재지 주소 (Tel: 02-0000-0000)		
	사 업 장	(우편번호) 소재지 주소 (Tel: 02-0000-0000)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			

2. 회사연혁

일 자	내 용	비 고
0000년 00월		

3. 대표자 이력

성명		○○○		
생년월일		1900. 00. 00. (만 00세)		
연락처		(사무실) 02-0000-0000 / (휴대폰) 010-0000-0000		
경력	기간	업체명	주생산품목(담당업무)	최종직위
	`00.00~`00.00.			
	`00.00~`00.00.			
	`00.00~`00.00.			

4. 국유특허 사업화 추진계획(예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 ※ ① “당해 기술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및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반기별/분기별 사업계획 작성

4-1. 사업의 최종목표 및 내용 요약

○ 사업의 최종 목표
○ 사업의 최종 목표

1차년도	○ (상반기) 제품 개발계획, 제품 연구계획 등
	○ (하반기) 제품 생산계획, 제품 유통계획, 기대매출액 등
2차년도	○ (상반기) 제품 납품계획, 제품 보완계획 등
	○ (하반기) 양산설비보완, 신규시장 진입전략 등
3차년도	○ (상반기) 제품 추가개발 계획 등
	○ (하반기) 실시기간 종료 후 사업계획, 양산설비 보완 등

4-2. 사업화 전략 및 방안

- ※ ① 사업 대상제품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이전기술의 활용 계획 및 기술의 기여율 등과
 ② 시제품이 최종 제품형태로 개발되는 동안의 계획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 제품개발 계획

○

-

☐ 사업화 제품 개요

- ※ 향후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할 제품의 ‘기본 개념도’, 또는 ‘사진’ 등을 포함하여 작성

○

○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 예상 판매수량 및 매출액(안)

5. 국유특허 사업화 세부 추진일정(예시를 참조하여 자유롭게 작성)

[illegible]